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 점검일시 : 2021.07.19 (월)

□ 점검결과

◆ 점검자 : 최영준

○ 추락재해 예방(건축부) - 최상층과 옥상층이 맞닿은 구간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 있는 안전난간이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즉시 보완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 안전난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이동식 비계는 해체하여 현장에서 반출하기 바람. - 또한, 5층 작업예정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비계는 상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하부에 아웃트리거가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자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보완하여 사용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낙하·비래 재해 예방(건축부) - 현장에서 사용중에 있는 인력용 리프트 상부 비상탈출구가 열려진 상태로 사용중에 있어 상부 낙하물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덮개를 덮어 사용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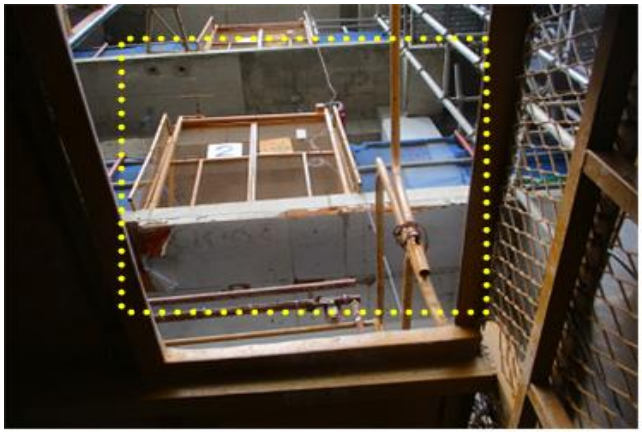
○ 낙하·비래 재해 예방(건축부) - 5층 1번 계단 바닥석재 작업장 단부주변에 석재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외력에 의한 충격 등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고, 자재가 전도될 경우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전도 및 낙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으로 자재를 이동하여 관리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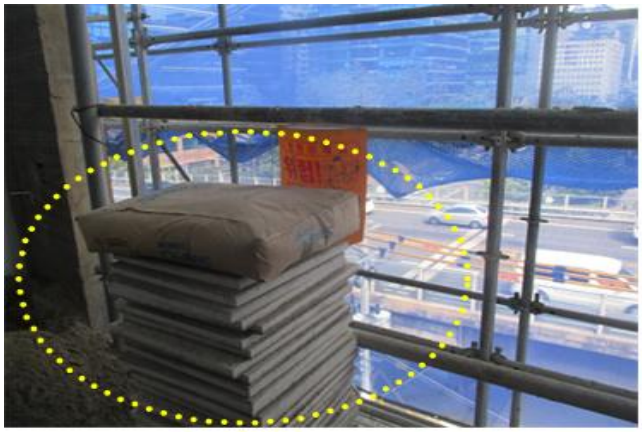
○ 기계기구 안전(건축부) - 바닥석재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이동형 고속 절단기가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통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 기계 오작동 또는 이동하는 작업자의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분리하고 작업자 이동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용하기 바람.	
○ 작업장조도 확보(건축부) - 지하2층 작업구간에 향후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작업을 진행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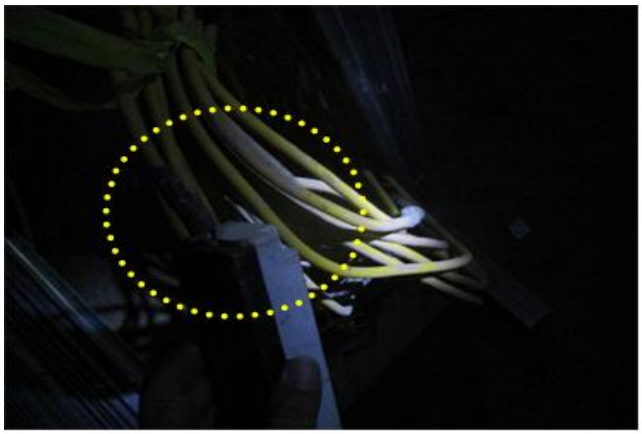
○ 감전재해 예방(건축부) - 지하2층 바닥은 배수조치가 미흡하여 물기가 있는 상태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된 가설전선을 바닥에서 사용할 경우 감전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전선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공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기 바람 - 또한, 작업예정 구간에 비치되어 있는 일반형 콘센트의 접지선이 단락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사용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제303조(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